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시장
- 나. 의안번호 : 제1601호
- 다. 제출일자 : 2020. 5. 25
- 라. 회부일자 : 2020. 5. 29.

2.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는 물재생센터의 기술전문성 향상과 경영혁신을 위해 위탁운영하던 서남·탄천 물재생센터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으로 전환을 추진중임.
- 나. 설립 예정 공단의 초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적정규모의 자본금 출자가 필요한 상황임.
- 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의결 사항으로 미리 그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출자개요
 - 대상기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출자규모 : 20억원

- 공단 현금출자 규모는 공기업설립시 일반적 자본금 산정기준인 1개월 임·직원 인건비와 운영비(1개월 인건비의 20%)를 합산하여 산출

※ '20년 서남·탄천 1개월 인건비는 약 1,507백만원으로 공단 전환시 직원 임금 예상분 및 임원(4명)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1개월 인건비를 1,667백만원으로 산정

(단위 : 천원)

	인건비('20예산)	1개월 인건비(총 인건비/12개월)
서남물재생센터	10,660,666	888,389
탄천물재생센터	7,434,047	619,504
총 계	18,094,713	1,507,893

나. 출자의 필요성

- 서울시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된 물재생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 부재, 경영효율성 저하, 반복적인 민간위탁 재계약으로 인한 공정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을 추진중임
- 공단 설립 초기 안정적인 운영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정규모의 현금출자가 필요한 상황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②항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 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③항 생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5. 검토의견

■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시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초기에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소요 예산을 공단 자본금으로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¹⁾에 따라 예산 편성 전에 서울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임.
- 이는 지난 4월 29일 제293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조례”라 한다)」가 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에 해당함.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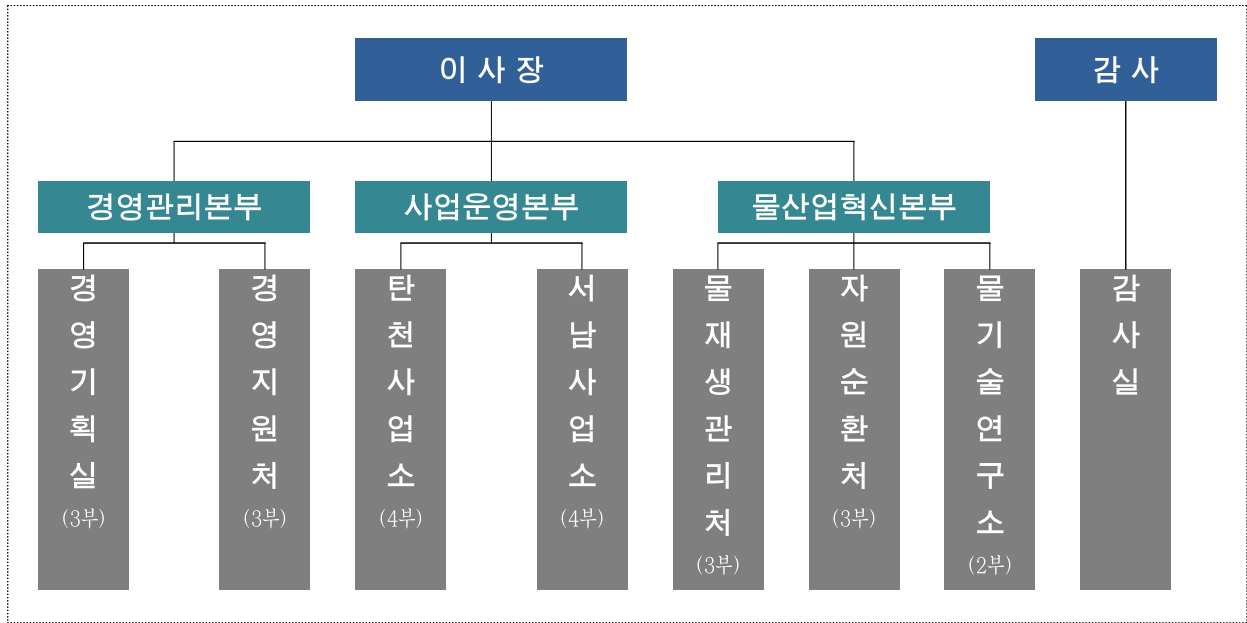
- 현재 서울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탄천물재생센터와 서남물재생센터를 통합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²⁾에 따라 2021년 1월을 목표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설립을 추진 중에 있음.
- 이를 위해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직원 채용 공모 및 선발, 정관 및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6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조직구성(안) 등 마련, 이사회 구성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계획 중에 있으며, 설립될 공단 산하에는 3개 본부, 3개 처, 2개 사업소, 1개 연구소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음.

[표 1]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조직도(1단계) 예시(안)



■ 출자의 타당성 검토

-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거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4)에서는 공단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3)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4)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 ④ 생략

- 금회 서울시가 공단에 현금을 출자하려는 것은 공단설립 관련 조례 제정 이후 법적 후속절차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9조5)에 따라 자본금의 납입이 있는 날부터 3주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의 자본금 출자는 그 규모와 상관없이 반드시 선행되어야하는 선결과제라 할 것임.
- 서울시는 금회 출자 규모를 공단 설립을 위한 자본금 20억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2017년 서울시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가칭)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에서 제시한 자본금 산정기준에 따라 1개월 공단 임·직원 인건비와 운영비에 해당하는 금액인 것으로 파악됨.
- 여기서, 자본금 20억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1개월 공단 임·직원 인건비의 경우 현재 공단 전환 예정인 탄천·서남물재생센터의 현직원 325명의 2020년도 1개월 인건비(약 15억 7백만원)에 임원 4명의 인건비 등을 반영한 16억 67백만원과 운영비를 인건비의 20%로 보아 산정한 운영비 3억 34백만원을 합한 액수임.
- 참고로, 서울시는 공단 설립 1개월 이후의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해서는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공기업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한다는 방침임.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등기) 공사는 자본금의 납입이 있는 날부터 3주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 6. 생략

■ 종합의견

-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단 설립은 지난 4월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본 궤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공단 설립 등기와 공단 설립 초기 단계에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적정규모의 서울시 자본 출자는 타당하다 하겠음.
- 다만, 보조금과 달리 출자는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선심성·낭비성 출자를 방지하기 위해 공단의 사업내용, 조직, 소요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의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료됨.